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944호
-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찬성자 13명)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등 악행을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징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치구에 대한 권장, 안 제10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 안 제11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교육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군함도(하시마)’가 포함된 근대산업 시설 유산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동일하게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담고도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¹⁾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한·일간 외교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유네스코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19. 11월),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적·종교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국내에서 육일기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인천, 충청남도, 울산에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1) 김유진, 「일본, ‘군함도’ 유산 왜곡 여전... 외교부 “약속 미이행 유감”」, 경향신문, 2020.12.4.

타·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인천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20.3.30.
충청남도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19.9.20.
울산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20.4. 9.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1944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안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홍성룡 의원(대표발의)	2020.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안 제10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발의안('20.8.12.자) 행자위 심사결과 회부('20.8.21.)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발의자와 타시도 사례 및 조례주관부서 논의('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 개념추가, 공공사용 제한관련 시장의 책무 구체적 규정, 일제강점기 전문가 위원회 포함 등(2020. 10. 16. 조례안 발의) 			
부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위원회설치, 문화조성 등 관련 시책 추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함 ○ 다만, 동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실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구체적 정의, 실태조사, 사례연구, 공공공간 운영·관리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사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 바람 			
대응방안	○ 별도 대응내용 없음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과	팀장	김남수(☎2133-2702)	담당 서점덕(☎2133-2703)